

대구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248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이태현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1. 3. 25.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합2005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207,255,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시에 이르러 2021.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2021. 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청구취지 감축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소취하에 해당하는 위 각 청구취지 감축에 대하여 피고 B이 각 부동의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10. 29. 접수 제23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10. 29. 접수 제238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채석업, 토사석 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1987. 12. 24.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14년경 경영이 어려워져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 B에 입사한 K는 피고 B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피고 B의 경영을 정상화한 후 자산을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K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자녀 Z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5. 4. 2. 원고를 설립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도 설립하였고, 피고 B이 우발적인 채무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재산과 설비를 원고에게 이전한 후 원고의 명의로 골재선별파쇄업 등의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목적물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2016. 4. 25.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총 매매대금: 701,361,342원 -계약금: 20,000,000원(즉시 지급) -중도금: 25,000,000원(2016. 4. 29.까지 지급) 20,000,000원(2016. 5. 9.까지 지급) 40,000,000원(2016. 5. 10.까지 지급) 50,000,000원(2016. 5. 17.까지 지급) -잔금: 546,361,342원(2016. 5. 18.까지 지급하되, 피고 B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동액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함)
2016. 5. 18.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	-총 매매대금: 756,699,133원 -계약금: 55,000,000원(즉시 지급) -중도금: 5,000,000원(2016. 5. 20.까지 지급 대위변제)

		-잔금: 696,699,133원(2016. 6. 10.까지 지급하되, 465,699,133원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동액을 상계하고, 231,000,000원은 피고 B 복구비 중 동액을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함)
2016. 6. 20.	이 사건 제7 내지 14 부동산	-총 매매대금: 2,012,941,136원 -계약금: 47,000,000원(즉시 지급) -중도금: 없음 -잔금: 1,965,941,136원(원고가 E로부터 양도받은 피고 B에 대한 채권 741,556,828원을 상계하고, 매매목적물에 관한 F은행의 가압류채권 1,007,048,722원, G의 가압류채권 16,039,029원, 주식회사 H의 근저당채권 201,296,577원을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함)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6. 5. 25. 접수 제14045호로, ②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6. 14. 접수 제15855호로, ③ 이 사건 제7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3. 접수 제2269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722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D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2018나234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4.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대법원 2019다2374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라 한다). 이후 위 확정판결에 따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바. 피고 B은 2019. 10.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10. 29. 접수 제23879호로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 B이 부담하는 산지복구비, 벌금 등을 대신 납부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이 제기한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정산금으로, i)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6. 4. 25.부터 2016. 5. 17.까지 송금한 155,000,000원,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6. 5. 18. 송금한 55,000,000원, 이 사건 제7 내지 14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6. 6. 20.부터 2016. 12. 12.까지 송금한 92,000,000원을 모두 합산한 302,000,000원, ii) 원고가 2016. 5. 20. 피고 B의 벌금을 대납한 5,000,000원, iii) 상계로 소멸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1722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양수금 채권 793,226,145원(원금 432,055,475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4.부터 2021. 2. 1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iv) 원고가 2016. 3. 9.부터 2016. 6. 3.까지 피고 B의 산지복구비용을 대납한 231,000,000원 및 추가 산지복구비용으로 원고가 지출한 90,000,000원, v) 원고가 2016. 8. 18. 피고 B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80,000,000원 합계 1,501,226,145원(= 302,000,000원 + 5,000,000원 + 793,226,145원 + 231,000,000원 + 90,000,000원 +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819,25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681,976,145원(= 1,501,226,145원 -

81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 I, 사내이사 J가 원고 대표이사의 부친 K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투자하면 위 각 부동산을 넘겨줄 것처럼 K를 기망하여 1,50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207,255,9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의 경우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아니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종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반복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만으로 종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특히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 중에서 한 사실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강력한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명효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6. 4. 25. 20,000,000원, 2016. 4. 29. 25,000,000원, 2016. 5. 9. 20,000,000원, 2016. 5. 10. 40,000,000원, 2016. 5. 17. 50,000,000원, 2016. 5. 18. 55,000,000원, 2016. 6. 20. 47,000,000원, 2016. 7. 29. 3,000,000원, 2016. 8. 4. 18,000,000원, 2016. 12. 12. 24,000,000원 합계 302,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ii) 피고 B에 부과된 벌금 5,000,000원이 2016. 5. 20.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사실, iii)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7122호로 양수금 432,055,47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부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iv) 피고 B이 2016. 2. 15. AA와 사이에 경북 칠곡군 AB 소재 석산 복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AA 명의의 계좌로 2016. 3. 9. 50,000,000원, 2016. 4. 5. 40,000,000원, 2016. 4. 26. 50,000,000원, 2016. 5. 9. 35,000,000원, 2016. 5. 27. 20,000,000원, 2016. 6. 3. 36,000,000원 합계 231,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v)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법무사AC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2016. 8. 18. 8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또는 정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6. 4. 25. 20,000,000원, 2016. 4. 29. 25,000,000원, 2016. 5. 9. 20,000,000원, 2016. 5. 10. 40,000,000원, 2016. 5. 17. 50,000,000원, 2016. 5. 18. 55,000,000원, 2016. 5. 20.

5,000,000원2), 2016. 6. 20. 4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7122 지급명령 결정에 따른 채권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AA에게 합계 23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D이 피고 B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에 기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정산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주장한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②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K가 피고 B이 거래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AD과 함께 채권자들이 피고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과 피고 B의 자산과 영업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지급 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K와 AD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 I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2016. 4. 25.자 매매계약서가 실제로는 계약상 중도금 지급일 이후인 2016. 5. 17.에 그 이전의 금전 거래 내역에 짜맞추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I과 K가 피고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피고 B의 재산, 설비 등을 원고에게 이전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거래 내역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정한 뒤, 피고 B이 원고에게 이전한 재산, 설비 등으로 마련된 돈으로 거래한 금전거래내역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의 판단은 K와 I 사이에 개인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매매대금의 반환 의무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그치는 것일 뿐 법인 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 B이 중국적으로 위 돈을 보유하여도 된다는

권리를 인정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단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판결 취지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들이 실제로는 강제집행 회피를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여 둔 재산, 설비 등으로 마련된 돈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위 사건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이 사건에서도 증명효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④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번복할 정도의 증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도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을 번복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⑤ 한편, 원고가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매매대금 지급 내역으로 주장하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가압류를 말소시킴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고, D이 피고 B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의 주장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선행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와 달리 매매대금 지급 내역으로 ‘피고 B에게 2016. 7. 29. 3,000,000원, 2016. 8. 4. 18,000,000원, 2016. 12. 12. 2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를 대신하여 추가 산지복구비용으로 9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추가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이 그 지급 내역에 관한 주장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내역 중 피고 B의 산지복구비용을 대납하였다는 321,000,000원(= AA에게 송금한 231,000,000원 + 추가 지출 90,000,000원)은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2016. 8. 18. 산지복구비로 예치해 둔 500,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⑦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과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이 상이하고, 이 사건 제7 내지 14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 2016.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수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6. 12. 12. 피고 B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 J가 K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 J가 K를 기망하여 K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K가 I,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정산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피고 B은 2019.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9. 이 사건 제1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 C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홍은아, 판사 함병훈

별지

목 록

1. 경북 칠곡군 L 잡종지 5,173㎡
2. 경북 칠곡군 M 잡종지 3,049㎡
3. 경북 칠곡군 N 임야 1,499㎡
4. 경북 칠곡군 O 임야 3,092㎡
5. 경북 칠곡군 P 임야 16,567㎡
6. 경북 칠곡군 Q 임야 26,925㎡
7. 경북 칠곡군 R 임야 46,235㎡
8. 경북 칠곡군 S 임야 4,114㎡
9. 경북 칠곡군 T 임야 6,090㎡
10. 경북 칠곡군 U 임야 1,362㎡
11. 경북 칠곡군 V 임야 616㎡ 중 주식회사 C의 35009/ 35306 지분
12. 경북 칠곡군 W 임야 22,215㎡
13. 경북 칠곡군 X 임야 41,883㎡
14. 경북 칠곡군 Y 임야 31,641㎡. 끝.

1) 원고는 당심에서 제출한 2021. 2.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위적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2) 원고가 피고 B의 벌금을 대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